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직무대리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03/04
협 조	건축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안전관리과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문서번호	설비부-3858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중 · 소규모 공사장 중대재해 예방대책

2024. 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1.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input type="checkbox"/>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input type="checkbox"/>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input type="checkbox"/>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input type="checkbox"/>	■	
2. 약자와의 동행				
목 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input type="checkbox"/>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input type="checkbox"/>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input type="checkbox"/>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input type="checkbox"/>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input type="checkbox"/>	

목 차

1. 관련 근거	1
2. 현황 및 분석	1
3. 추진 방향	4
4. 중·소규모 공사장 세부 안전관리 실행 계획	5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방안	5
② 사업주·현장소장 중처법·산안법 교육체계 강화	7
③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실태 상시점검 및 보완	8
④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체계 강화 및 모의훈련	9
5. 행정 사항	10

중·소규모 공사장 중대재해 예방대책

'24. 1. 27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본부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22.1.27.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부칙 제1조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사업장의 사업주 등 미적용
 - 공사금액 50억 미만은 ['24. 1. 27.부터 확대적용](#)

2 현황 및 분석

- 관련법령
 - 처벌규정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질병	중대산업재해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중사자) + ‘중대시민재해’ (이용자 등)

○ 확대시행('24.1.27.)

구분	대규모	대규모 + 중소규모
인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사비	공사금액 50억 이상	(제한없음)

□ 사고현황(전국)

○ 규모별

【'23.1.~9. 안전보건공단】

계	5인미만	5인~49인	50인~99인	100인~299인	300인~999인	1,000인 이상
84,199	24,674	36,336	6,511	8,033	4,175	4,470

○ 유형별

【'23.1.~9. 안전보건공단】

계	추락	전도	깔림	부딪힘	맞음	끼임	절단	교통사고	무리한 동작	기타
84,199	10,570	21,343	2,463	7,617	6,038	9,755	7,511	5,851	5,474	7,577



<추락>



<깔림>



<끼임>

□ 공사장 분석(규모별)

○ 적용 공사장 : 총 167개소 [중·소규모(50억미만) : 88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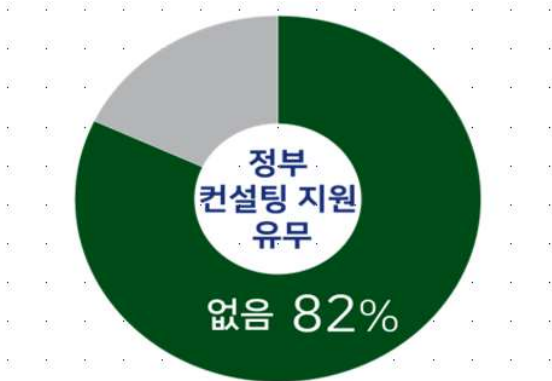
구분	총계	시설국					도철국			시행일
		소계	설비	건축	토목	방재	소계	설비	타부서	
계	167	134	81	18	27	8	33	15	18	'24.1.27. 이후
대규모	79	53	3	15	27	8	26	8	18	'24.1.26. 이전
중소규모	88	81	78	3	-	-	7	7	-	'24.1.27. 이후

- 설비공사(설비부, 도철설비부) : 총 96개 계약건 중 50억미만 85개(88.5%)
- 종합공사(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등) : 총 71개 계약건 중 50억미만 3개(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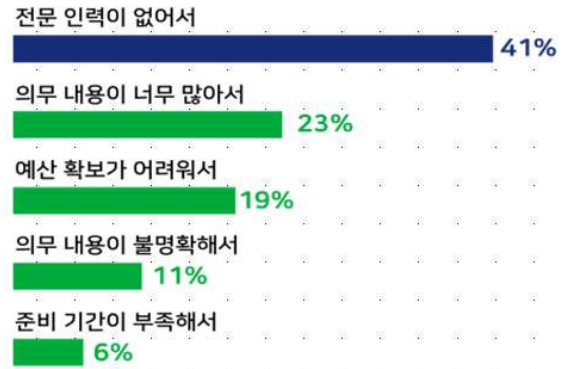
□ 중처법 이행준비 실태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50인(역) 미만 사업장 1,053개소 대상]
 - 정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로부터 관련 **컨설팅 받은 적 없음(82%)**
 -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전문 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

< 50인(역)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23.12.) >



중처법 관련 정부 컨설팅 지원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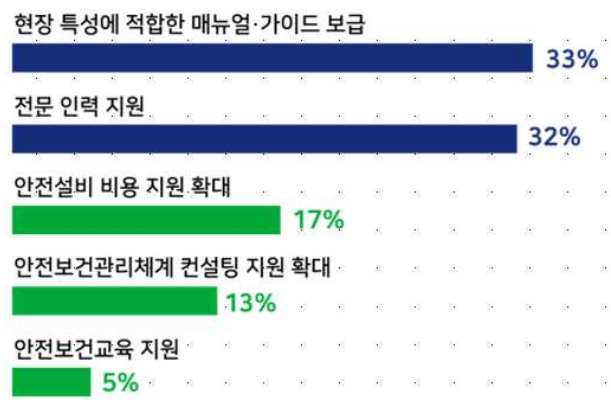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 중·소규모 시공사 어려움 해소방안 :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②사업주·현장소장 교육 강화, ③법 의무내용 이행실태 상시점검 및 보완 등

○ 지원이 필요한 항목

- 가장 어려운 항목은 **업무수행평가 기준 마련(29%),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27%)**
-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중처법 의무사항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 50인(역)미만 기업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시공사가 법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공종별 안전매뉴얼·작업 가이드 제작·배포, 안전의식 강화교육, 안전장비 착용 등을 상시점검』

3 추진 방향

목표

중·소규모 공사장에서의
중대재해 ZERO

추진 전략

컨설팅
지원

시공사
교육체계 강화

의무사항
이행실태
상시점검

초기대응
체계 강화
및 모의훈련

추진 과제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사업주현장소장의 관리역량 함양
- ▶ 현장종사자 설문조사 및 적용효과 평가를 통해 관리체계 개선

2. 사업주현장소장 중처법·산안법 교육체계 강화

- ▶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들이 알기 쉽도록 반복하여 교육
- ▶ 사업주현장소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효율적 안전보건관리 지도

3.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실태 상시점검 및 보완

- ▶ 공사관리관 원데이(월1회) 안전점검 시 병행 점검 시행
- ▶ 시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건설사업관리단에서 현장확인

4.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체계 강화 및 모의훈련

- ▶ 경미한 사고부터 신속한 초기대응 및 보고체계 확립(단톡방 등)
- ▶ 반기별 중소규모 공사장 모의훈련을 통해 사고대응 능력 함양

4 중·소규모 공사장 세부 안전관리 실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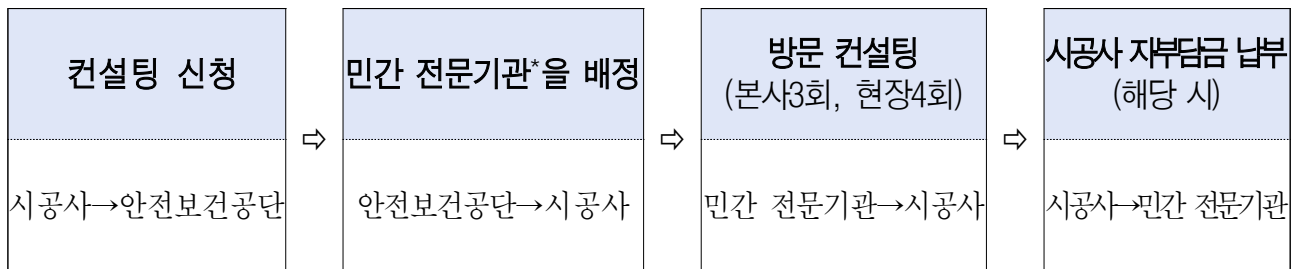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방안 신규

□ 안전보건관리체계(시공사 의무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

핵심요소	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3.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 제도, 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 컨설팅 처리도



* 민간 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관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인 등

□ **컨설팅 대상(안전보건공단)**

- 전문건설업체(전기,통신,소방 포함),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 **컨설팅 내용**

단계별 핵심사항	방문 컨설팅 내용 (민간 전문기관 → 시공사)
1단계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파악)	본사와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체계 구축 실태를 확인, 체계 구축 기본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2단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현장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본사의 지원 체계 중심으로 ① 본사 체계 구축 7대 핵심요소에 대한 개선과 ② 현장 위험성평가 이행 확산 및 고도화 지원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본사 담당자와 함께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추가 보완 사항을 확인,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등의 현장작동성이 확보되도록 유도

□ **우리본부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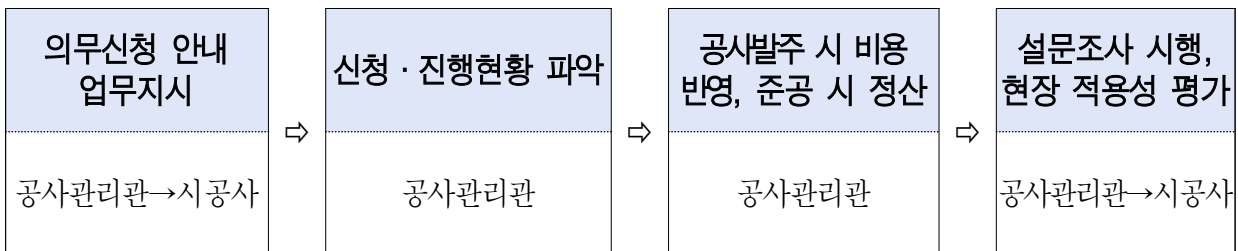
- **컨설팅 비용 예산지원**

- 중·소규모 공사 발주시 원가계산서에 컨설팅 비용 반영, 준공 시 정산

구분	무료	비용 예산 지원 대상		비고
		(수수료 3만원/회)	(수수료 12만원/회)	
건설업	(전문) 200위 초과 (종합) 1천위 초과	(전문) 20~200위 (종합) 301~1천위	(전문) 20위 이내 (종합) 201~300위	시공능력 평가액

- **세부 운영방안**

- 본부 중·소규모 중처법 적용대상(88개소)에 컨설팅 의무 신청토록 업무지시
- 각 대상별 컨설팅 신청 및 진행현황 파악, 신청 유도
- 컨설팅 완료 시공사에 설문조사 시행, 현장 적용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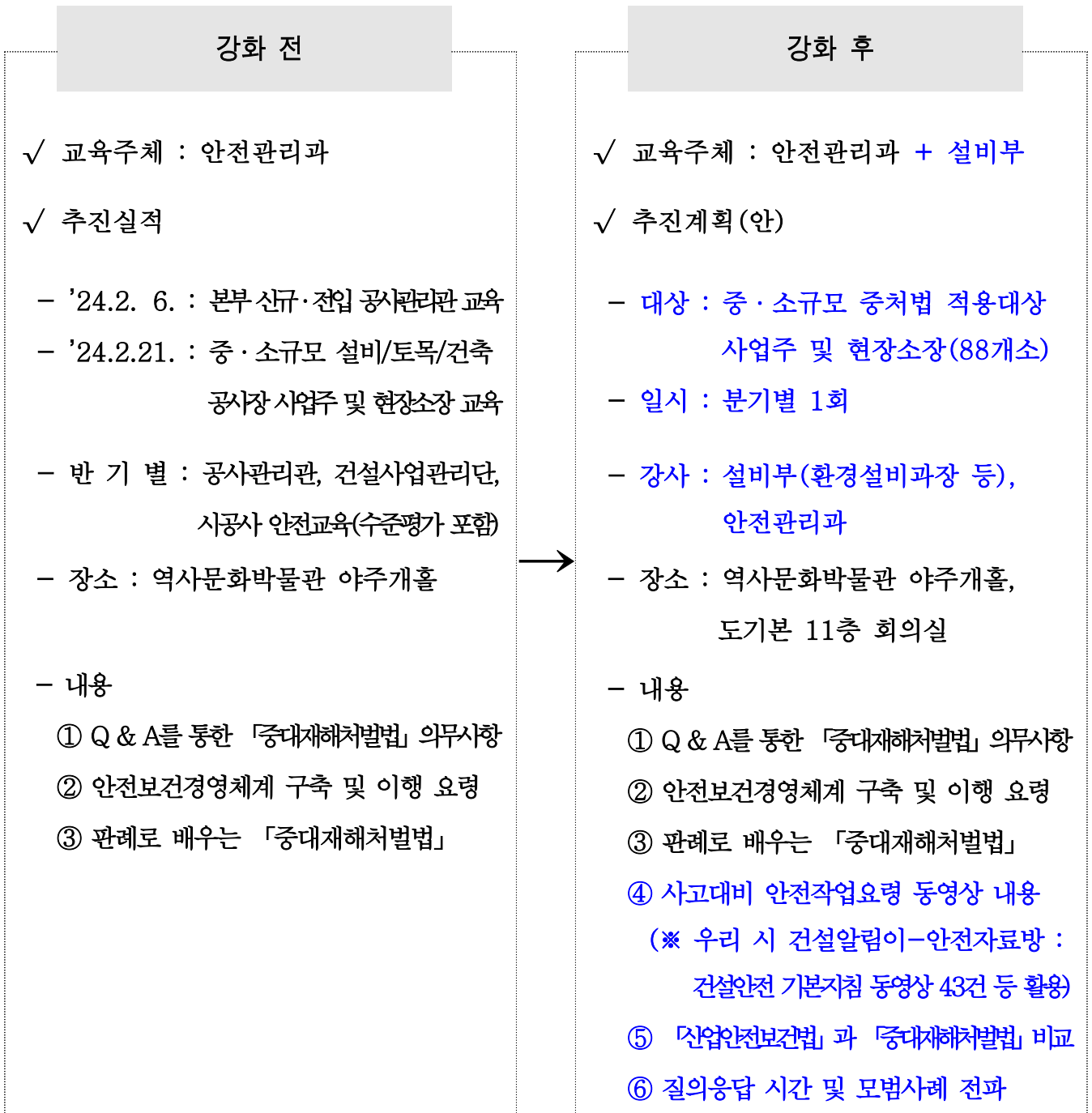


2 사업주·현장소장 중처법·산안법 교육체계 강화 강화

□ 교육개요

- '24.1.27.부터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처법 확대 적용(88개소)
- 준비가 부족한 중·소규모 공사장 영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강화

□ 교육계획



3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실태 상시점검 및 보완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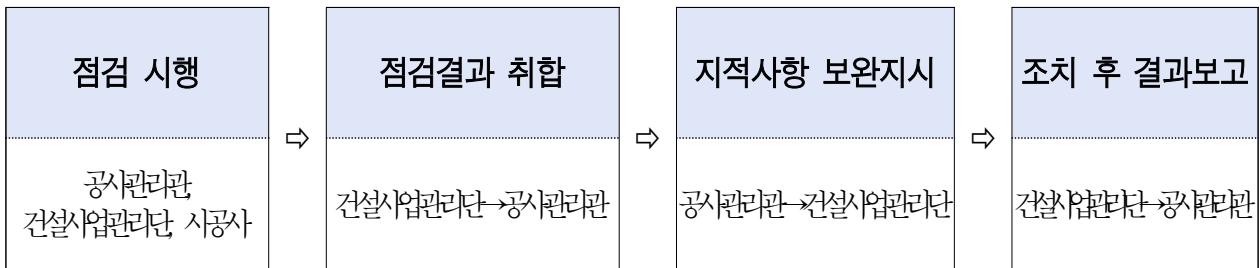
□ 법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상시점검

- 대 상 : 본부 중·소규모 중처법 확대 적용대상 88개소
- 점검주기 : 월 1회(원데이 안전점검 시 병행 실시)
- 점검자 :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합동 점검
- 중점 점검내용 : 14개 중처법 의무사항
 - 체크리스트에 의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합동 점검(붙임1 참고)

□ 체크리스트(붙임 1 참조)

구분	의 무 사 항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3조)	비 고 (관련법령)
①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중·소규모 제외(500인 이상 적용)
③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점검	반기1회 점검, 위험성평가
④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⑫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반기1회 점검
⑬	▶ 안전보건 의무교육 이수 등	반기1회 점검
⑭	▶ 이행사항에 대한 문서보관(5년간)	

#### □ 보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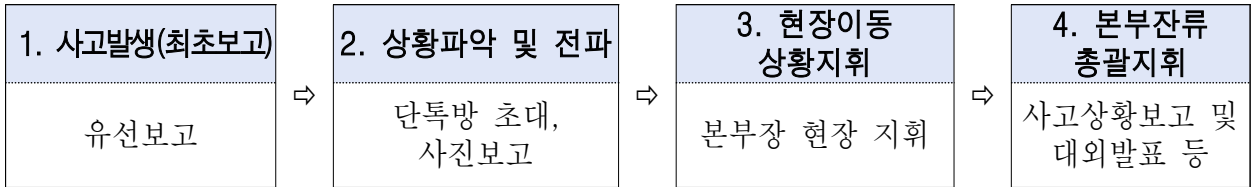
- 점검결과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업무지시(공사관리관 → 건설사업관리단)
  - 공사관리관이 조치결과를 건설사업관리단 문서로 접수
- 원데이 안전점검시 병행 점검으로 행정 효율화

## 4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체계 강화 및 모의훈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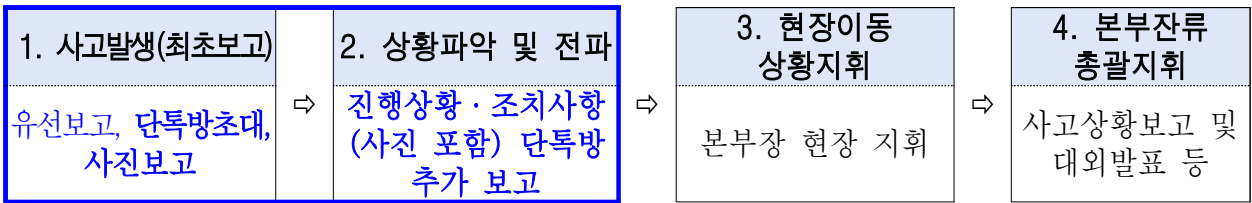
### □ 개요

-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체계’ 강화 및 모의훈련을 통해 사고대처 능력 함양

### □ 기존체계



### □ 강화체계



### □ 강화내용

- 안전사고 발생 즉시(5분 내) 단톡방 개설, 사고개요 및 해당 사진 보고
  - 참여자 : 부서장, 주무과장 담당 과장 공사관리관 감리단장 및 해당공종 감리 현장대리인
- 이후 조치사항은 진행되는 대로 추가 보고, 긴급상황 해소 후 서면 동향보고

### □ 모의훈련(각 현장 설비분야 시공사 통합)

- 대 상 : 설비분야(기계,전기,통신,소방) 공사장(78개소)
  - ※ 타분야 공사장(10개소)은 자체 시행
- 시행주기 : 반기별 1회
- 훈련유형 : 추락·낙하, 기구·기계, 화재·폭발, 감전사고 등
- 훈련주관 : 시공사(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 훈련목표
  - 실제 상황을 가정해 훈련함으로써 초기대응 체계 강화내용 숙지
  - 안전 규정·절차 숙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모의훈련에서 발견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5

**행정사항** **관련부서 공통사항**

- 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에 중소규모 공사장 중대재해 예방대책 통보
- 시공사에 컨설팅 의무사항 업무지시 및 사후관리(설문조사, 현장 적용효과 평가) 시행
- 중·소규모 공사장 중처법 의무사항 이행실태 상시점검 및 보완 확행
- 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에 초기대응 체계 강화내용 통보 및 모의훈련(88개소)

 **설비부**

- 중·소규모 공사장 사업주·현장소장 분기 1회 교육 총괄 추진
- 중·소규모 공사장 모의훈련 시행(설비분야 공사장 78개소)

 **안전관리과**

- 사업주·현장소장 대상 교육내용 및 강사 섭외 협조

 **건설사업관리단**

- 중처법 의무사항 이행실태 상시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체계 강화내용 숙지 및 반기별 모의훈련 이행

 **시공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의무 신청(중·소규모 공사장 88개소)
- 『사업주·현장소장 중처법·산안법 분기별 교육』 참석
- 중처법 의무사항 이행실태 상시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체계 강화내용 숙지 및 반기별 모의훈련 이행

- 붙임 1.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중처법 적용 공사장 현황(설비부) 1부.  
3. 시공사 본사 및 현장 컨설팅 내용(안전보건공단) 1부.  
4. 안전사고 대비 작업요령 동영상(설비분야) 1부.  
5. 중대재해 현황 및 요인별 재해사례·예방수칙 1부.  
6.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 1부.  
7. 중대재해처벌법 1부. 끝.